

항목: 학생

발행: 2011-12-22

번호: **A-101**

제목: 입학, 재입학, 전학 및 모든 학생에 대한 목록을 통한 공지

페이지 1 의 1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은 2009년 6월 29일자 규정 A-101을 대체한다.

**변경 사항:**

- 학년 레벨 배정에 관한 문제와 관련된 교육장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페이지 2, § 1.A.6&7.)
-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에 등록하려는 학생들의 배정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한다. (페이지 2, § 1.A.7.)
- 출결에 관한 문제와 조사에 대한 절차와 관련 명칭을 갱신한다. (페이지 3, § 1.A.12; 페이지 11, § 7.B.)
- 형제자매 우선권을 부여하는 상황을 명확히 한다. (페이지 3, § 2.A.)
- 학교 존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재학생의 형제자매 보다 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유니버설 유아원 프로그램의 입학 우선권 순위를 변경한다. (페이지 4, § 2.B.)
- 유치원 입학전형을 통해 존 학교에서 해당 존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한다. (페이지 4, § 2.C; 페이지 5, § 2.E.)
- 과밀 학급 문제로 인해 본인의 존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배정받는 학생들의 권리와 우선권에 대해 명확히 한다. (페이지 6, § II.E.)
- 존 학교에서 존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 갖고 있는 의무와 비-의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페이지 5, § II.E.)
- 중학교 선택 절차에 참여하는 학군에서 중학교 선택 절차를 통해 매치를 받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우선권에 대해 명확히 한다. (페이지 6, § II.F.)
- 고등학교 학생들의 입학과 재입학에 관한 권리에 관해 명확하게 한다. (페이지 7, § II.G; 페이지 7, § III.A.)
- IEP 또는 추천된 서비스에 변경이 있는 장애 학생들의 권리에 관해 명확하게 한다. (페이지 9-10, § V.A.)
- 문의처에 관한 연락 정보를 갱신한다. (페이지 15-16.)

## 개요

본 규정은 2009년 6월 29일자 규정 A-101을 대체한다. 이 규정은 뉴욕시 공립 학교 시스템에서의 학생 입학, 제적 및 전학에 관련된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I. 서문

학생 등록 담당실은 75학군 및 79학군 소속의 학교들을 제외한 모든 학교들에 대한 등록 정책과 등록 계획에 대한 유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학군의 교육장은 등록 운영과 이들 학군에서의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 A. 입학 전형-일반적인 정책 및 절차

1. 학생의 인종, 피부색, 신념, 출신 국가, 성별, 성 정체성, 임신, 이민/시민권 상태, 장애, 성적지향, 종교 또는 민족에 따라 공립학교 입학이 거부될 수 없습니다.<sup>1</sup>
2. 뉴욕시에서 학생들은 다음에 규정된 바와 같이 6세에서 17세가 되는 학년도의 마지막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21세가 되는 학년도에 끝날 때까지 학교에 계속 재학할 수 있습니다.
  - a. 6번째 생일이 입학하는 역년도에 포함되는 어린이는 반드시 1학년으로 입학하여야 합니다.
  - b. 5번째 생일이 입학하는 역년도에 포함되는 어린이는 부모님이 자녀를 학교에 등록하시기로 하셨다면 반드시 해당 어린이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하는지의 여부나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왔는지에 관계 없이 유치원으로 입학하여야 합니다.
  - c. 4번째 생일이 입학하는 역년도에 포함되는 어린이는 반드시 유아원으로 입학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학교에 한정되며 정원이 있을 경우에만 입학이 가능함).
3. 뉴욕시 공립학교에 입학할 자격을 갖기 위해서 학생은 반드시 뉴욕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기본 거주지가 뉴욕시가 아닌 학생은 누구라도 반드시 교육감 규정 A-125에 따라 입학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 뉴욕시 공립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학교에 등록하는 시점에 거주지 관련 질문지(Residency Questionnaire)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구분된 모든 학생은 반드시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학생 프로그램에 추천되어야 합니다. 학부모와 청소년 대상 맥키니-벤토 법 (첨부 번호 7)과 함께 제공되는 거주지 관련 질문지를 참고하십시오.
4. 학생이 뉴욕시 공립학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및 학생 모두 반드시 참석하여<sup>2</sup>다음 내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거주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섹션 VII 참조);
  - 아동의 출생 증명서 또는 여권
  - 아동의 예방접종 기록

<sup>1</sup> 인종은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만 학교 등록을 결정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별은 한 종류의 성별을 가진 학생을 교육하는 학교에 지원할 때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sup>2</sup> 섹션 VIII에 안내된 바와 같이, 만약 학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학생이 등록 담당실이나 학교에 와서 본인이 노숙자임을 밝히고 등록이나 전학을 원한다고 한다면, 등록/전학을 하기 위해 학부모와 함께 참석할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독립한 학생은 또한 등록할 때 학부모의 참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아동의 최근 성적표/성적 증명서(가능한 경우)
- 적용 대상이거나 가능한 경우, 아동의 개별교육 프로그램(IEP) 및/또는 504 조정 계획

만약 학생이 예방접종 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면, 해당 학생을 반드시 임시로 등록시키고 학교에서는 교육감 규정 A-701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반드시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출생 증명서, 여권 또는 기타 적절한 학생의 나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해당 학생을 반드시 임시로 등록시키고 학교에서는 반드시 적절한 학년 배정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학교에 적절하게 등록하였거나 학생 등록 담당실 또는 적용되는 경우 특수교육 위원회에서 등록 또는 배정 받은 어떤 학생도 학생이 배정/등록 받은 학교에서 거부되지 않을 것입니다.
6. 학생이 미국 내 다른 학교 시스템에서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으로 전학을 왔다면 해당 학생은 제출된 적절한 교육관련 기록에 따라 학생이 마지막으로 재학했던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배정되었던 학년에 따라 등록될 것입니다. 교육 기록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해당 학생은 연령 대를 고려하여 적절한 학년에 배정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학교장이나 학교장의 대리인은 적절한 교육 기록의 접수에 따라 적절한 학년 배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본 규정에 따라 배정을 받았으나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다른 학년에 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학교장은 교육장과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입니다. 교육장은 적절한 학년 레벨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7. 만약 학생이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으로 전학을 왔다면 해당 학생은 제출된 적절한 교육관련 기록에 따라 학생이 마지막으로 재학했던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배정되었던 학년에 따라 등록될 것입니다. 미국 외 국가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이 적절한 교육 기록을 제시하지 못했다면 해당 학생은 학생의 나이에 따라 적절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등록될 것입니다. 입학하는 해에 15 세가 되는 교육 기록이 없는 외국에서 온 학생은 당 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학생이 당 해 6 월에 학교에 등록한다면 학생은 8 학년에 배정될 것입니다. 만약 학생이 당 해 6 월 이후에 학교에 등록한다면 학생은 고등학교에 배정될 것입니다. 이런 학생이 고등학교에 배정된 경우, 학교장이나 학교장의 대리인은 적절한 교육 기록의 접수에 따라 학교에서 적절한 학년 배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밖에 본 규정에 따라 배정을 받았으나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다른 학년에 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학교장은 교육장과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입니다. 교육장은 적절한 학년 레벨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8. 학교 또는 보로 등록 담당실에서 입학 허가를 받고자 하는 모든 학령기 학생은 반드시 5 일 내(학교 수업일 기준)에 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법에 따라, 학생에게 체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제출하도록 할 수 없으며 또한 체류 신분이나 체류 신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학교 입학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학생 또는 학부모의 체류 신분 관련 내용은<sup>3</sup>어떤 학교 양식 및/또는 기록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10. 사회보장 기관의 보호 하에 있거나, 청소년 감호 기관 및 교정 기관의 보호 하에 있는 학생들은 기타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학교에 등록될 것입니다.
11. 유치원에서 12 학년에 재학 중이며 뉴욕시 내에서 거주지가 변경된 학생들은 해당 학교의 최종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감 규정 A-

<sup>3</sup>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학부모의 의미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학생과 부모 관계 또는 법적 보호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는 학생이 독립한 미성년자이거나 18세 이상일 경우 학생 본인을 의미합니다.

450 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 외에 징벌이나 학업 문제로 인해 존 학교나 거주하고 있는 학군으로 전학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12. 새로운 거주지에 따라 현재 학교에 등록할 자격을 잃게 되는 거주지의 변동이 발생한 상기 섹션 I. A.11 에 언급된 바와 같은 경우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의 학부모들은 학생의 출결 상황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들 학생은 노란색 스쿨 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출석률이 나빠지고 지각이 잦아진다면 학교에서는 반드시 정기적인 출석과 지각을 줄이기 위해 노력과 지원을 하며 학생과 학생 가족과 함께 방법을 간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결석이 빈번하고 지각이 계속된다면 학생의 안녕을 최대한 고려하여 학교장은 해당 학생의 새로운 주거지에 따라 해당 학생이 전학할 자격이 있는 적절한 학교로 전학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반드시 차일드 퍼스트 네트워크 출결 담당자(Children First Network Attendance Point Person)에게 정기적인 출석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과 학생 가족과 함께 기울인 노력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학생의 잦은 결석 및/지각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일드 퍼스트 네트워크 출결 담당자는 학생의 거주지가 변경되기 전 및 후의 출석과 지각 기록을 비교한 기록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의 출석 지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한 기록을 검토할 것입니다. 차일드 퍼스트 네트워크 출결 담당자가 출석과 정시 출석 비율이 악화되었다고 확인하면, 담당자는 전학 요청을 승인 또는 거부할 보로 등록 수석 디렉터 또는 디렉터 대리인에게 관련 정보를 알릴 것입니다. 만약 요청이 승인된다면 학교장은 학생이 전학을 가게 되었음을 학부모에게 알리는 통지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 등록 담당실은 학생의 전학을 실시하고 학생을 존 또는 배정된 학교나 기타 학생이 전학할 자격을 갖춘 적절한 학교에 배정할 것입니다.

노숙 학생들 또는 임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출석률이 낮은 학생의 전학은 맥키니-벤토 노숙자 지원 법 (42 USC 11431)의 타이틀 VII 및 교육감 규정 A-780 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13. 학생이 등록 자격을 갖춘(예. 주소지, 형제자매 우선 순위, 특수교육 프로그램 추천 내용 등) 초등학교에 등록을 위해 예비 등록 또는 등록된 학생의 경우, 해당 학생은 반드시 등록을 위해 반드시 입학허가 시점이 등록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의 자격 상태가 변하였다면 학생 등록 담당실은 학생을 전학시킬 것이며 해당 학생이 자격을 갖춘 적절한 학교에 등록시킬 것입니다.

## II. 입학 절차

### A. 형제자매 우선 순위<sup>4</sup>

1. 배정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제자매는 신청하려는 학생의 같은 가구에서 거주하는 남자 형제 또는 여자 형제(이복 남자형제, 이복 여자형제, 의붓 남자형제, 의붓 여자형제, 수양 남자형제, 수양 여자형제 포함)입니다.
2. 학교에서는 배정을 하기 전에 형제자매 상태에 대해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신청서를 제출할 시점에 초등학교에 이미 예비 등록 또는 등록된 학생의 형제자매는 아래 섹션 II.B에 안내된 바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한 학군 및 뉴욕시 영재 프로그램 모두 및 유치원 프로그램의 입학허가를 받을 때 정원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첫 번째 우선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격을 갖춘 쌍둥이나 기타 다둥이 형제들은 동일한 선호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면 동일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입니다.
4. 유치원-5 학년, 유치원-6 학년 또는 유치원-8 학년 초등학교에서, 신청 학생은 형제자매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에 예비 등록 또는 등록된 경우 및 9 월에 학년도

<sup>4</sup> 형제자매 우선 순위는 초등학교 레벨에서만 적용될 것입니다.

시작하는 시점에 해당 학교에 5 학년 또는 그 이하의 학년에 재학하게 될 때만 형제자매 우선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5. 장애를 갖고 있는 형제자매가 특수 학급 또는 협력 팀 교육 프로그램 정원을 요청하면 요청하는 프로그램의 제공 가능한 정원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6. 유치원 입학 허가를 위한 형제자매 우선권은 아래 섹션 II.C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B. 유니버설 유아원 프로그램 입학

1. 유니버설 유아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학년도 12 월 31 일에 반드시 4 살이 되어야 합니다.
2. 학생들은 정원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입학 우선권 순위에 따라 뉴욕시 교육청 유아원 프로그램에 입학 허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 a. 형제자매가 입학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에 예비 등록 또는 등록하였으며 다음 9 월에 학기가 시작할 때 해당 학교에 유치원-5 학년이 되는 형제자매가 있음이 증명된 존 학생.
  - b. 상기 (a)에 언급되는 내용에 따라 존 학교에 지원하지 않은 존 학생.
  - c. 형제자매가 입학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에 예비 등록 또는 등록하였으며 다음 9 월에 학기가 시작할 때 해당 학교에 유치원-5 학년이 되는 형제자매가 있음이 증명되었으며 해당 학군에 거주하며 존 학교가 없거나 존 학교에 유아원 프로그램이 없는 학생.
  - d. 형제자매가 입학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에 예비 등록 또는 등록하였으며 다음 9 월에 학기가 시작할 때 해당 학교에 유치원-5 학년이 되는 형제자매가 있음이 증명되었으며 해당 학군에 거주하며 유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른 존 학교가 있는 학생.
  - e. 형제자매가 다음 9 월에 학기가 시작할 때 해당 학교에 유치원-5 학년이 되는 형제자매가 있음이 증명된 다른 학군에 거주하는 학생.
  - f. 존 학교가 없거나 존 학교에 유아원 프로그램이 없는 해당 학군에 거주하는 학생.
  - g. 존 학교가 아닌 학교의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는 해당 학군에 거주하는 학생.
  - h. 거주하는 보로에 있는 학교의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는 해당 학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 i. 거주하는 보로가 아닌 지역에 있는 학교의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는 해당 학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 C. 유치원 입학

1. 존 학교들은 공간이 허락하는 한, 등록을 위해 학교에 방문한 시기에 관계 없이 학교가 소속된 존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을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존 학교들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에 따라 신청 학생들의 입학 허용하여야 합니다.
  - a. 다음 해 9월 학년도가 시작될 때 유치원-5학년에 형제자매가 등록할 것임이 증명된 존 학생
  - b. 상기 (a)에 언급되는 내용에 따라 존 학교에 지원하지 않은 존 학생.

공간이 충분하다며 학군의 필요에 따라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 학교들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다음의 우선 순위 그룹에 배정 제의를 할 권한이 부여될 것입니다. 학생 등록 담당실 만이 이 우선 순위 밖에서 비-존 학생의 배정을 허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 지역의 존 학교에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나 이원언어 또는 자폐 스펙트럼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몰입

수업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c. 다음 해 9월 학년도가 시작될 때 유치원-5학년에 형제자매가 등록할 것임이 증명된 해당 학교의 존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학군에 거주하는 학생
- d. 형제자매가 다음 9월에 학기가 시작될 때 해당 학교에 유치원-5학년이 되는 형제자매가 있음이 증명된 다른 학군에 거주하는 학생.
- e. (c) 윗 부분의 내용에 속하지 않지만 해당 학군에 거주하는 학생
- f. 해당 학교에 재학중인 형제자매가 없으며 다른 학군에 거주하는 학생.

2. 비-존 학교들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에 따라 학생들의 입학 허용하여야 합니다:

- a. 다음 해 9월 학년도 시작될 때 유치원-5 학년에 형제자매가 등록할 것임이 증명된 학군 학생
- b. 다음 해 9월 학년도 시작될 때 유치원-5 학년에 형제자매가 등록할 것임이 증명된 학군 외 거주 학생
- c. 상기 언급된 학생 외 학군 내 거주 학생
- d. 상기 언급된 학생 외 학군 외 거주 학생

D. 존 초등학교<sup>5</sup> 및 중학교 입학허가<sup>6</sup>

1. 지원 자격

- a. 정원에 따라 존 학생들은 본인의 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있습니다;
- b. 존 학교가 없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은 과거에 학생의 주소지에 거주한 학생들이 배정 받았던 학군 내 중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있습니다.

2. 등록/배정

- a. 정원에 따라 존 학생들은 본인의 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 b. 비-존 초등학교 및 중학교 또는 본인의 존이 아닌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 허가를 바라고 있는 학생들은 본 규정서에 정해진 정책이나 학생 등록 담당실의 결정에 따라서만 배정/등록할 수 있습니다.

E. 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대한 정책

- 1. 뉴욕시 공립학교에서는 유치원의 첫 공립 교육입니다. 해당 학년도에 유치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학년도 12월 31일에 반드시 5살이 되어야 합니다.
- 2.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존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본 규정서에 요약된 바와 같은 정책에 따라 이들 학교에 등록 우선권을 갖게 되며 반드시 비-존 학생들에게 배정을 하기 전에 입학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 3. 존 학교들은 존 학생들을 등록시켜야 하며 반드시 본 규정서에 정의된 정책 및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 결정하고 승인한 정원에 따라 존 학생들의 입학 허용하여야 합니다. 비-존 학생들은 본 규정서에 정해진 정책 및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서만 존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sup>5</sup> 추가적인 상기 조항에 따라, 본 규정의 조항들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에도 적용됩니다.

<sup>6</sup> 섹션 II. C의 정책은 상기 섹션 II.A.2에 정해진 정책에 따라 운영되는 유아원에 대한 입학 전형을 제외한 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대한 입학 전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5. 존 학교는 본 규정서에 요약된 정책에 따라 해당 입학허용 존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을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존 학교는 어떤 학년의 학급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기 위해 존 학교 학년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계획부(Division of Portfolio Planning)에서만 등록에 관한 학년 제한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6. 학생의 학년에 학생수가 너무 많아 학생들을 반드시 존 학교가 아닌 학교에 등록시켜야 할 경우, 학생은 거주하는 학군 내에서 대안적인 배정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배정 자격은 이런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게 기타 비-존 신청자들보다 더 높은 우선권을 보장합니다. 과밀 학급 문제에 따라 다른 학교로 배정받은 학생들은 반드시 배정을 수용하거나 또는 존 학교에서 기타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7. 승인된 제한 계획에 따라 본인의 존 학교가 아닌 학교로 배정 받은 학생들은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 정한 마감일까지 존 학교의 대기자 명단에 지속적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유치원 학생이 재배정된 경우, 다음 해 1학년에 정원이 남게 된다면 대기자 순서에 따라 재배정 되었던 유치원 학생들에게 입학이 제외될 것입니다. 재배정 받은 학생들은 존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재배정 받았던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존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이런 학생들은 거주지에 따른 존 학교로의 자동 전학 권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재배정 학교 통학을 위한 교통편 수혜자격을 갖고 있던 해당 학생들은 이런 경우가 아니어도 수혜자격이 있거나 학생 교통 담당실의 지침에 따라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면 더 이상 교통편을 제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초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을 마침에 따라 이런 학생들은 등록했던 초등학교나 거주지에 따라 중학교에 진학할 선택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8. 학생의 존 초등학교의 전학에 대한 학부모 요청은 정원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9. 존 학교의 기본적인 의무는 해당 존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만약 존 학교에서 모든 존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할 수 없다면, 학교의 비-의무 프로그램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 F. 입학 허가 정책

1. "선택" 프로그램을 통한 입학 허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 만 해당)

인의 IEP 에 따라 배정되거나 배정 예외 요청 (PER)이 허용되었으며 본인의 존이 아닌 초등학교에서 학교의 마지막 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학업을 계속한 신청 또는 선택 절차에 따라 입학이 허가된 모든 학생은 학생이 초등학교를 다닌 학군의 존 초등학교에 일반적으로 입학이 허용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중학교에 입학 허가를 요청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선택을 실시하는 학군에서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다녔던 학군 내 중학교에 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은 또한 본인의 존 중학교를 포함한 학군 내 중학교에 입학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학군의 중학교에 진학하기를 선택한 학군 외 초등학교 학생은 학군 내 거주하는 신청자들과 동일한 우선권을 갖습니다. 중학교 선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군에서 권리가 있는 학생이 본인이 선택한 학교에 매치되지 않았다면, 이런 학생은 거주하는 학군에 배정 우선권을 갖습니다.

2. 유치원-8 학년 또는 6-12 학년으로 구성된 학교의 입학

유치원-8학년 또는 6-12학년으로 구성된 학교는 반드시 여러 가지 입학 시점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유치원-8학년 또는 6-12학년으로 구성된 학교에 입학 할 때, 학생은 고 학년의 입학에 대한 우선권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동시에 자격을 갖춘 다른 학교나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G. 고등학교 입학

- 1.

2. 8학년에서 입학하려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전형 절차를 통해 해당 학교에 지원한다면 본인의 존 고등학교에 입학이 보장될 것입니다.
3. 어떤 고등학교도 (75 학군 학교, 79 학군 프로그램 및 거치 학교 외) 학생을 등록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만 고등학교 학생들을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4. 고등학교 입학전형 절차의 결과에 따라 학교로 목록을 통해 공지된 학생들은 본인이 매치되었던 학교로 학년도 동안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III. 재입학

#### A. 재입학/재입학 권리

일반적으로 다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학생은 뉴욕시 공립학교로부터 퇴학된 후 1년 내 이전에 다니던 학교로 재입학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1.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 a.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은 이전에 거주하던 주소지로 다시 돌아온 학생은 정원에 따라 본인의 존 학교로 돌아올 권리가 있습니다;
  - b. 이전에 비-존 학교에 다니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만약 거주지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면 1년 내 해당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c. 이전에 뉴욕시 또는 학군 영재 프로그램에서 학습했던 학생들은 정원이 남아 있으며 동일한 학군 (학군 프로그램의 경우)에 거주하게 되었다면 영재 프로그램에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d. 학군 영재 프로그램에서 소속되었으며 다른 학군으로 돌아온 학생들은 정원이 남아 있다면 새로 거주하게 된 학군의 영재 프로그램에 재입학 할 수도 있습니다.
2. 고등학교 학생
  - a. 고등학생들은 현재 날짜 기준 1년 내에 학교를 떠났었다면 이전에 다니던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포함)로 재입학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sup>7</sup>
  - b. 학생의 재입학 권리에 관한 의문이 있다면 학교 등록 담당실에서 재입학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3. 통합 팀 교육이나 특수 학급 프로그램에 정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거나 목록에 따라 고지된 후로 1년 내 정원에 따라 본인이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 재입학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IV. 전학

학교는 전학 요청을 검토하기 위해 학생 가족들과 면담을 하여야 하며 전학이 허가되면 모든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래 안내된 상황을 제외한 모든 경우,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결정합니다.

- A. 모든 배정 예외 요청뿐만 아니라 모든 전학 요청<sup>8</sup>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
  1. 교육감 규정 A-450 및 A-443에 따른 정학 담당 보로 디렉터가 관리하는 정학에 따른 비자발적인 전학과 자발적인 전학;
  2.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이 존 학교에 등록하고자 하였으며 학교장이 학생의 전입을 허용한 경우 (정원이 남아 있을 때)의 전학

<sup>7</sup> 코드 39으로 인해 학교를 떠났던 학생은 학생이 21세가 되는 해 마지막 학년도까지 학교에 재입학 할 수 있습니다.

<sup>8</sup> 배정 제외 요청은 학생의 존이 아닌 학교로 가을학기에 배정이 결정되었거나 어려움이 있어 요청되었을 경우.

## 3. 75 학군 및 79 학군 내 전학

B. 모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아래와 같은 특별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타 전학이 허용된 경우, 모든 경우에 학생 등록 담당실은 전학 요청을 거부 또는 승인할 수 있으며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1. 보육 문제에 따른 전학 (유치원-5학년 만 해당): 직장 및/또는 보육 기관의 위치에서부터 학교까지의 거리에 따른 보육 문제로 인한 어려움에 따라 학부모는 자녀의 전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반드시 고용주 및 보육 제공처로부터 보육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형제자매 전학 (유치원-5학년 만 해당): 한 명 이상의 형제자매가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음에 따른 형제자매 전학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의료문제에 따른 전학: 학부모는 전학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절박한 의료 문제가 검토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 의료문제에 따른 전학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는 반드시 건강상의 문제점 및 전학이 추천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료 기관의 레터헤드에 의사가 작성 및 서명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청의 적절한 직원 (CFN 또는 학생 담당실 직원)이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의료 기관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4.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에 대한 절차는 교육감 규정 A-449 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허용될 수 있습니다: (a) 낙오아동방지법안(No Child Left Behind Safety Transfer : NCLB)에 따라 학교 내에서 학생이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또는 (b) 해당 학교에 학생이 지속적으로 다니는 것이 학생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낙오아동방지법안 (NCLB) 요청은 정학담당 보로 디렉터가 조정할 것입니다.

비-NCLB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을 고려하며,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학교장/담당자로부터 해당 요청을 받은 후 1 주일 이내에 보로 등록 수석 디렉터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모든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 요청 및 관련 요청에 대한 문서는 반드시 학교로부터 제시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보로 등록 담당실에 관련 문서들을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이 고려되려면, 학교에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문서들을 팩스로 보내야 합니다:
    - 학교 사건 보고서 또는 기타 학교 문서;
    - 경찰 조사서, 접수 번호 또는 법원의 관련 문서;
    -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 조사 요약서; 및
    -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 접수 양식.
  - b. 만약 제출된 서류들이 안전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디, 안전담당 교감 또는 학교장은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를 학생 등록 담당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c. 만약 학생의 전학이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결정된다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관계 없이),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이 승인될 것이며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 새로 배정될 학교를 결정할 것입니다.
5. 운동을 위한 전학 (고등학생 만 해당)
- a. 일반적으로 운동을 위한 전학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b. 특정 운동 종목의 공식적인 공립학교운동리그(PSAL) 장부에 이름이 올라있으며 단계적 폐교 조치가 내려져 학교 건물에서 특정 운동을 계속할 수 없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운동선수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운동 종목의 공식적인 (PSAL) 장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학생 운동 선수로 팀이 해체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또한 기타 학교로 전학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 정원이 남아 있으며 해당 운동 종목의 PSAL 팀을 운영하며 학생 운동 선수의 학업적 체육적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학교를 배정할 것입니다.

- c. 특정 운동 종목의 공식적인 (PSAL) 장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학생 운동 선수로 낙오아동방지법안 (NCLB)에 따른 전학을 신청한 학생은 본인의 NCLB 신청서에 있는 학교로만 전학할 자격이 있습니다.
- d. 상기 b 및 c에 요약된 바와 같은 경우, 학생 운동 선수는 새로운 학교에서 공식 PSAL 팀의 참가 자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학생은 반드시 팀에 참가하기 위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e. 고등학교 운동 선수에 관한 모든 규정은 PSAL 학생 운동 선수 규칙과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다음 웹사이트에서 검색: [www.psal.org](http://www.psal.org)).

#### 6. 통학 어려움에 따른 전학 (고등학생 만 해당)

- a. 가정에서는 반드시 통학 어려움에 따른 전학 요청을 위해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b.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통학시간이 90분이 넘거나 대중 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예 3번 이상 교통편을 갈아타야 하는 경우)에만 통학 어려움에 따른 전학이 고려될 것입니다.

#### c. 배정 예외 요청 (초등학교 및 중학교 만 해당)

- 1.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생들은 본인의 존이 아닌 학교로 배정된 경우, "배정 예외 요청서 (PE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배정의 예외는 기본적으로 어려움에 관련된 문제가 제시될 때 고려될 것이며 학교가 예상했던 등록수에 미치지 못했으며 정원이 남아있을 때만 특정 학교로의 입학이 허가될 것입니다.

### V.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장애 학생 대상 등록 정책

- A. 일반교육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모든 정책은 또한 입학전형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해당되는 정책을 포함하여 장애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장애 학생의 전학 및 배정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프로그램의 변경이 생길 경우 장애 학생은 새로운 개별교육 계획(IEP)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해당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다면 학생들은 재학중인 학교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IEP에 변동이 있을 때, 장애 학생들은 특수한 서비스나 프로그램 또는 75 학군 배정이 필요한 변동이 아니라면 재학중인 학교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2. 거주 학군이 아닌 지역의 학교에 재학중인 장애를 갖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으로 추천된 서비스가 변경되었다면 정원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계속 교육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원이 남아 있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학교로 돌아갈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B. 전에 장애 학생으로 판정 받았었으며 IEP 없이 뉴욕시 공립학교에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적용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이전 뉴욕시 IEP에 따라 보로 등록 담당실이나 특수교육 위원회에서 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적절하다면 30 일 이내에 학생의 학교에서 IEP 회의를 열어 새로운 IEP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C. 만약 학생이 뉴욕시가 아닌 곳에서 발행된 특수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였다면, 학생은 반드시 동류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결정하고 적절한 학교 배정을 할 적절한 CSE 에 추천되어야 합니다.

## VI. 거주지 결정

- A. 학생의 거주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거주지는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도를 갖고 있는 정해진 학교 학군의 지리적 경계선 내에서 생활을 위해 물리적으로 머물 곳으로 결정됩니다.
2. 학교 입학은 목적으로 한 학생의 거주지는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 돌봄 및 관리가 이루어 짐에 따라 결정됩니다.

- B. 다음의 내용은 학생의 생물학적 또는 입양 부모 또는 법적인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학생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절차를 요약한 것입니다:

1. 학생은 반드시 학교에 등록할 때 부모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동반하여야 합니다 (섹션 VIII. 및 교육감 규정 A-780 에 설명된 바와 같은 독립한 청소년의 경우 제외). 부모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는 생물학적 또는 입양을 통한 학생의 부모, 수양 부모, 법적으로 지정된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포함됩니다. 한 사람이 다른 개인에 대한 책임과 보호를 맡았다면 이 사람은 다른 개인의 후견인으로써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후견권의 증명이 학생 등록에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2. 만약 학생을 등록하려는 개인의 학생의 생물학적 또는 입양 부모 또는 법적인 후견인이 아니라면, 해당 개인은 반드시 학교 또는 보로 등록 담당실에 성명, 집주소, 전화번호, 생물학적 또는 입양 부모 또는 법적인 후견인의 성명, 학생이 본인과 함께 거주하게 된 이유 및 학생이 함께한 기간 등 (첨부 번호 1 참조)을 서술한 자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학생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상태에 관한 의문점이 있다면, 학생은 반드시 학교에서 학생의 보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 대한 더욱 상세한 조사를 위해 등록 유보되어야 합니다.

- C.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학생이 생물학적 또는 입양 부모 또는 법적인 후견인이 아닌 개인과 거주함을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합니다 :

1. 학생이 해당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것 같습니까?
2. 생물학적 또는 입양 부모 또는 법적인 후견인이 학생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타인에게 학생에 대한 보호 및/또는 관리 권한을 양도하였습니까?
3. 생물학적 또는 입양 부모 또는 법적인 후견인이 지속적으로 학생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4. 학생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성인이 학생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5. 학생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성인에게 학부모가 학생에 대한 보호와 관리권한을 넘겨주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까? 학교에서는 생물학적 또는 입양 부모 또는 법적인 후견인으로부터 맹세 및 공증 받은 증명서 또는 자술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6. 학생이 타인과 함께 거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생이 타인과 거주하는 이유가 오직 학생이 특정 학교에 입학하거나 학생의 현재 학교에서 입학자격이 없는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만을 위한 것이라면 학생의 주거지가 제시한 주소지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 VII. 주거지 증빙

A. 주거지 증빙은 반드시 학생이 학교에 등록할 때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문서가 주거지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전화 고지서, 케이블 고지서, 신용카드 고지서, 의료보험 카드 또는 운전 면허증은 주거지 증빙 서류로 접수될 수 없습니다. 주소지 증명을 위해서는 다음 중 두 가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a. 제출일 기준 60 일 내에 National Grid (이전의 Keyspan), Con Edison, 또는 Long Island Power Authority (Rockaways 거주자 대상)\*에서 발급한 거주자의 성명이 적힌 주거용 공과금 고지서(가스 또는 전기);
  - b. 제출일 기준 60 일 내에 국세청(IRS), 뉴욕시 주택청, 인적 자원국(HRA), 아동 복지국(ACS) 또는 아동 복지국 계약처 등을 포함한 연방 정부, 주 정부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거주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문서 또는 레터헤드가 포함된 편지;
  - c. 거주자의 임대 계약서 원본, 집문서 또는 모기지 고지서;
  - d. 현 재산세 납부 고지서;
  - e. 주택용 수도 고지서;
  - f. 세금 납부를 목적으로 제출된 양식이나 급여 영수증과 같은 지난 60 일 이내에 고용주가 발급한 공식 급여관련 문서. 고용주가 레터헤드에 작성한 문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에 언급된 어떤 문서도 한 가지 만으로 충분한 주거지 증빙으로 거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2. 학부모가 아파트나 주택을 재임대하고 있거나 한 가정 이상이 주거 공간을 공유하고 있으며 한 명 만이 임차 또는 주택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런 학부모는 반드시 학부모 본인과 원 임대자가 해당 가정이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 공증받은 "주소지에 관한 자술서"에 서명하고 반드시 섹션 VII.A.1 에 상세히 안내된 바에 따라 원 임대자의 주소지 증빙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 번호 3 검토).
3. 학부모가 한 곳 이상의 뉴욕시 주거지를 갖고 있다면, 학교 등록을 목적으로 한 주거지는 해당 학생이 생활하는 곳으로 정해야 합니다.
4. 만약 주소지 증빙에 대한 타당함에 의문점이 있거나 학부모가 적절한 주소지 증빙 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학생 등록 담당실이나 학교 중 적절한 곳에서 학생을 임시로 등록시킬 것입니다. 이런 경우 주소지 조사의 결과에 따른 유보조치로 학생이 임시로 학교에 등록되었음을 안내하는 임시 등록 통지문 (Provisional Admission Notice)을 학부모에게 보낼 것입니다. 학생이 등록한 학교에서 아래 "주소지 위조 및 조사"에 관련된 절차에 따라 주소 증명에 관한 조사를 시작할 책임이 있습니다. 조사가 유보된 동안 학생의 입학은 거부할 수 없으며 학생은 수업에 출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5. 노숙 학생들은 학교에 등록하기 위해 주소지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섹션 VIII.D. 참조

B. 주소지 위조 및 조사

학생의 주소지에 관한 의문점이 있거나 학생의 등록을 위해 주소지를 위조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학교에서는 반드시 이런 문제를 발견한 지 30 일 이내에 주소지 증빙을 조사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없는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차일드 퍼스트 네트워크 출석 담당자에게 조사의 결과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차일드 퍼스트

네트워크 출석 담당자는 결과를 검토하고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케이스를 클러스터 담당자(Cluster Point Person)에게 추천할 것입니다. 클러스터 담당자는 반드시 조사와 관련된 문서를 검토하고 이것이 전학을 명하기에 충분한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클러스터 담당자는 반드시 그 후 학생 전학을 승인할 보로 등록담당 수석 디렉터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보로 등록담당 수석 디렉터는 그 후 전학할 학교와 전학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를 결정하고 해당 학생을 전학 학교 장부에 등록할 것입니다.

1. 만약 학생이 전학하게 된다면 학교장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지문을 학부모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a. 조사를 통해 발견한 내용; 및
  - b. 재학중인 학교에 다닐 자격이 없으며 적절한 학교로 전학하게 될 것임; 및
  - d. 보로 등록담당 수석 디렉터가 결정한 바에 따른 전학할 학교의 이름, 번호 및 주소 및 전학이 효력을 갖게 될 날짜; 및
  - d. 통지문을 받은 지 5일 이내에 학교의 의혹을 뒷받침한 클러스터 담당자의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2. 클러스터 담당자가 학교장 및 보로 등록담당 수석 디렉터와 논의하여 적절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이의제기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학생의 전학이 유보될 것입니다. 이의제기에 대한 판결은 학교 수업일 기준 10일 내 이루어 질 것입니다.
3. 적절한 전학할 학교를 결정하기 위해 학부모는 주소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이 요구될 것입니다. 만약 학부모가 학생이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주소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보로 등록담당 수석 디렉터의 결정에 따라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라 적절한 학교로 전학하거나 뉴욕시 주민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면 학부모는 교육감 규정 A-125에 따라 학비를 지불하여야 할 것입니다.

## VIII. 특수 상황

### A. 미아

학교에 입학허가를 받고자 하는 학생이 친권을 갖고 있는 부모로부터 격리된 "미아"로 의심된다면, 학교장은 반드시 학생에게 입학할 허가를 즉시 인근 경찰서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 B. 독립한 미성년 (16-17 세)

1. 본인의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따로 거주하며 양자 양육이 필요하거나 받고 있지 않은 학생들 만이 독립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학생이 독립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학생은 학교 등록을 위해 학부모를 동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이 독립한 것으로 간주할 지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모가 양육 권리를 포기하였습니까?
  - 해당 학생이 학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거나 가정의 렌트비를 내고 있습니까?
  - 학생 본인의 자산의 생활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 해당 학생이 마지막으로 부모와 접촉한 것이 언제입니까?

학생에게 독립 입증서 (첨부 번호 5 참조)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거주지 증빙으로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발급 받은 렌트 영수증, 거주지를 꾸민 사람으로부터의 진술서 또는 미성년 학생의 입증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학생이 18 세 이하로 결혼하였으며 학생이 독립한 경우.

### C. 양쪽 부모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학생

1. 학생은 한 곳 만을 법적인 거주지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떨어져 사는 학생의 경우, 학생의 거주지는 양육자로서의 관리를 제공하는 부모에게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2. 공동 양육권을 갖게 된 부모의 경우 학생의 주거지는 물리적인 양육권 주로 갖게 된 부모의 거주지가 될 것입니다.
- D. 노숙, 무동반 및<sup>9</sup> 가출 청소년
1. 정의:
    - a. 고정적이고 정기적이며 적절한 야간 거주지가 없는 학생을 노숙 학생이라고 함.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어린이가 포함된다: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족이 집을 잃어버렸거나 비슷한 이유(더블 업-doubled up-이라 함)로 친구, 친척 또는 기타 인물과 거주 또는 적절한 대안 책이 없어 모텔, 호텔, 트래일러 파크나 캠핑장에서 거주하는 어린이
      -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호텔, 종교관련 쉼터 및 정신적인 문제로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것을 포함하여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해 공적 또는 사적으로 운영되는 쉼터에서 거주하는 어린이 또는
      - 수양 가정으로의 입양을 기다리는 어린이
      - 일반적으로 정규 숙박 시설로써 사용되지 않는 공적인 또는 개인적인 장소에서 거주하는 어린이
      - 자동차, 공원, 공적인 공간, 버려진 빌딩, 표준 이하의 주거지, 버스 또는 기차 역이나 비슷한 장소에서 거주하는 어린이
    - b. 독립한 청소년이란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물리적인 후견권이 없는, 상기 설명된 노숙자의 정의를 충족하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2. 노숙, 무동반 또는 가출 아동은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또는 적용되는 경우 입학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거주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새로운 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노숙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하기 전에 통학에 따르는 어려움을 증명할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sup>10</sup> 선택된 학교에서는 어린이나 무동반 학생이 일반적으로 등록에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도 즉시 노숙 또는 무동반 학생을 등록시켜야 합니다. 노숙 학생들의 권리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는 교육감 규정 A-780을 참조하십시오.
  3.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거주 프로그램에서 생활하는 학생은 노숙 학생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거주지 주소는 학부모가 제공한 우체국 주소를 이용하거나 2 자리 학군 번호 뒤에 "DV" 및 카운티, 보로, 주 및 우편번호를 이용하여 생성한 주소를 입력함으로써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 학군은 Box 01DV, New York, New York 10002 이라 기록합니다.
  4. 영구적인 주소가 없다는 것이 학교에서 학생의 입학에 거부할 수 있는 적절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들 학생은 맥킨리-벤토 노숙자 지원법 타이틀 VII (42 USC 11431) 및 교육감 규정서 A-780 에 따라 즉각적으로 뉴욕시 공립학교에 등록하여 학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5. 무동반 학생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보호 하에 있지 않은 학생을 의미합니다. 무동반 학생은 등록 또는 전학을 하는데 성인을 동반할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등록 담당실 직원 및 학교 교직원은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학생의 나이와 상황을

<sup>9</sup> 무동반/가출 청소년에는 가출 청소년을 위한 주거 프로그램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포함됩니다.

<sup>10</sup> 통학의 어려움에 따른 전학은 고등학교 레벨에만 적용됩니다.

고려하여 아동 서비스 담당청(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에 알려야 할 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6. 노숙 학생은 거주지 증빙을 포함한 서류 미비로 인해 즉각적인 학교 등록이 거부되지 않을 것입니다.

#### E. 수양 보호(Foster care) 학생

수양 보호를 받고 있으며 수양 가정이 변경된 학생들은 처음 학교에서 계속 학습할 수 있으며 또는 새로운 주소에 따라 지리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거주지가 변경된 수양 보호를 받고 있는 고등학생으로 새로운 수양 가정으로부터 학교까지 통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학생은 통학 어려움에 따른 전학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수양 가정에서 가까운 학교로 전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 F. 가정 및 병원에서의 교육으로부터 재입학하려는 학생

가정 및 병원에서의 교육으로부터 재입학하려는 학생은 가족과 협의하여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 다른 학교로 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해당 학생이 이전에 다녔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G. 기관의 보호에서 재입학하려는 학생

주, 시, 또는 사설 기관으로부터의 보호에서 벗어나 공립학교로 재입학하려는 학생들은 빠르고 적절한 교육 배정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에는 단체 거주, 정신 병동, 발달장애 센터, 보호감호 시설 및 뉴욕주 아동 및 가정 서비스 담당실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 및 아동 서비스 담당청 (ACS)에서 후원하는 기숙 치료 센터 등이 있습니다. 학교에 등록하기 전에 보호감호 기관으로부터의 석방 통지문을 제출할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1. 해당 기관에서 학교로 돌아갈 것을 추천하도록 결정하자 마자, 기관에서는 IEP 를 포함한 관련 학교 기록과 함께 학생의 상태 변경을 설명한 통지문을 적절한 학생 등록 담당실의 보로 등록 담당실로 보내야 합니다.
2. 뉴욕시 공립학교로 재입학하려는 기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뉴욕시 또는 그 밖의 보호감호 시설로부터 뉴욕시 학교에 재등록하려는 학생들은 본 문서에 기재된 등록 정책에 부합하여 익년도 내에 전에 다녔던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와 논의하여 전에 다니던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3. 학교에 등록하기 전에 보호감호 기관으로부터의 석방 통지문을 제출할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H. 정학을 마치고 다시 등록하려는 학생

1. 정학 처분을 받았던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원하거나 교육감 규정 A-450 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전학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에 교육을 받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정학 처분을 받았던 8 학년 학생들 중 다음 가을 학기에 9 학년 배정을 받았던 학생들은 8 학년 졸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배정 받았던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학교에서는 학생의 "정학" 기록에 따라 학생의 전학이나 등록 허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IX. 목록을 통한 공지/전학 절차

#### A. 학년도 말에 학생 전학

1. 6월에 "보내는" 학교들은 "받는" 학교들에 진급의 결과를 9월에 입학하게 되는 일반 교육 및 특수 교육 학생에 대한 목록을 통한 공지로 알려야 합니다.
2. "보내는" 학교의 교장은 반드시 목록을 통한 공지에 서명을 하고 입학허가 및 예방접종 정보가 갖추어 졌으며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현장 감독이나 담당자는 반드시 특수교육 점검 목록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3. 모든 "받는" 학교들은 담당자를 정해 전학을 오는 학생들의 기록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미비된 자료가 있다면, "받는" 학교에서 즉시 "보내는"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4. 누적된 기록, 특수 클리닉 패키지 및 기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기록들은 학교장이 지명한 입학허가 담당직원이 검토하고 취합하여 일반적으로 6월의 첫 2 주간으로 정해지는 기록 전달의 날 (Transfer of Records Day)에 "받는" 학교로 전달될 것입니다. 모든 학교들은 반드시 학년도가 끝날 때까지 절차를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B. 목록을 통한 공지 절차를 이용하는 이유

1. 학생들은 6월에 다음과 같은 이유 만으로 목록을 통한 공지로 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게 됩니다:
  - a. 상급 학교로의 진학 (공립이나 사립) 예.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중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 b. 학교의 폐교, 개교 또는 재조직;
  - c. 학교들은 기타 다른 이유로는 학년도의 어떤 기간에도 학생들의 목록을 통한 공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지역사회 기관(COB)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유아원 학생들은 별도의 입학전형을 통해 기타 학교/프로그램에 입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 학교로 목록을 통해 공지될 것입니다.

C. 커뮤니티 학교 학군 학교들은 75 학군 (뉴욕시 프로그램 학교)들로 학생들을 목록을 통해 공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D. 75 학군에서는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전형 절차에 참여하였으며 특수교육 위원회 (CSE) 재평가가 끝난 경우에만 고등학생을 75 학군에 아닌 고등학교로 목록을 통해 공지될 것입니다.

E. 목록을 통한 공지가 준비되는 동안 교육청 가정 교육 또는 병원 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일반 교육 학생들은 정규 학교 기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쇄된 목록을 통한 공지에 이름을 올릴 수 없습니다.

F. 어떤 학생도 5 개 보로 외에 학교로 목록을 통한 공지를 할 수 없습니다.

X. 문의

전화:  
212-374-6095

출결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본 규정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십시오:

Office of School and Youth Development –  
Mandated Responsibilities

전화:  
718-935-2009

등록, 입학전형 및 전학 요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십시오:

The Office of Student Enrollment (학생

팩스:

212-374-5751

팩스:

212-374-5568

등록 담당실)

전화:  
212-802-1500  
전화:  
917-521-3639

75학군 입학전형 및 전학에 대한 문의는  
75학군으로 직접 연락하십시오.  
79학군 입학전형 및 전학에 대한 문의는  
79학군으로 직접 연락하십시오.

팩스:  
212-802-1678  
팩스: 917-521-  
3649